

# 기안용지

분류기호 문서번호	도계 30320- <i>40</i>	(전화: 731-6351 )	시행상 특별취급
보존기간	영구·준영구. 10. 5. 3. 1.	시 장	
수신처 보존기간		載	
시행일자	'90. 11		
보조 기관	도시계획국장 전근 도시계획국장 <i>장</i> 환경국장 <i>장</i>		
기안책임자	노 경 찬	협조 기관	사무담당관 주부기획국장 의정사무장
경유 수신 참조	국안참조.	발신 명외	문서 등록 1990. 11. 23 중재관 1990. 11. 23 인
제목	영동토지구획정리 사업 계획 변경(기권인가)인가에 따른 공람공고		
제 1 안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border-radius: 50%; padding: 10px; display: inline-block;"> <p style="text-align: center;">도시공고</p> <p style="text-align: center;">1990. 11. 22</p> <p style="text-align: center;">제 51호</p> </div>		
수신 : 내부결재			
제목 : 같은건			
1. 우리시에서 '90.12 사업시행 : 완료계획으로 추진중에 있는 영동토지구획			
정리사업 지구중 아파트 지구로 지정된 반포, 양구정 아파트 지구내 일부 공공시설(도로, 공원			
의 시설처와 아파트 지구 전역지 처리대책과 관련하여 추진중인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변경 승인이 지연되어 부득이 '91.6.30까지 환경환경 처분의 연기가 불가함으로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토지구획정리 사업법 제12조(관계서류의 공람)및 제14조(규약 또는 사업			
계획의 변경), 같은법 시행령 제40조(권한의 위임)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사업계획			

영동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 일부 공공시설(도로, 공원)의 시설처와 아파트 지구 전역지 처리대책과 관련하여 추진중인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변경 승인이 지연되어 부득이 '91.6.30까지 환경환경 처분의 연기가 불가함으로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토지구획정리 사업법 제12조(관계서류의 공람)및 제14조(규약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 같은법 시행령 제40조(권한의 위임)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사업계획

변경(기간연기)인가에 따른 공람공고입니다.

가. 사업계획(기간연기) 내용

지구명	시영면적	시영자	사업시행기간		비고
			당초	변경	
영등지구	26,764,872.9㎡중 5,421,066.6㎡	서울특별시	'68.1.18- '90.12.31	'68.1.18- '91.6.30	6개월연장

나. 공고개요

- 1) 공고종별 : 일간지 2개사 및 시보개제
- 2) 소요예산 : 2,400,000원 (30,000원×4단×8.8cm×2사×1.1)
- 3) 지출과목 : 계속지구, 영등토지, 사무관리, 수용비 및 수수료
- 4) 지출방법 : 공고우 청구에 의하여 지출

제 2 단

공 고 (안)

서울특별시 공고 제 123 호

공고번호: 190.11.1 제 23 호  
 담당: 행정기획팀 업무담당자  
 (인)

영등토지구획정리 사업 계획변경(기간연기)인가에 따른 공람공고

1. 건설부 고시 제6호('68.1.18) 및 제8호('68.1.23), 제77호('71.8.24)로 사업시행인가된 영등토지구획정리 사업시행지구중 : 합계화정 처분 미완료된 반포, 압구정 아파트 지구에 대하여 토지구획정리 사업법 제12조 및 제14조, 같은법 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계획변경(기간연기)인가 코자 다음과 같이 공람공고 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개발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

영등토지구획정리사업  
 계획변경(기간연기)인가  
 공고

관련연기 보이기. 원 봉지는 본 공고로 공용한다.

1990. 11.

서울특별시

사업계획 변경 (기간연기) 내용

지구명	시행면적	시행자	사업시행기간		비고
			당초	변경	
영동지구	26,764,872.8㎡ 중 5,421,066.6㎡	서울특별시	'68.1.18- '90.12.31	'68.1.18- '91.6.30	6개월연장

제 3 안

수신 : 수신처 참조

제목 : 같은건

1. 우리시에서 사업시행중인 영동토지구획정리 사업 시행지구내 반포, 압구정

아파트 지구에 대하여 별첨 공고문(사본)과 같이 사업계획 변경(기간연기)연기에 따른 공방

공고여윌기 통보하시 관련업무에 참고하기 바람.

첨부 : 공고문(사본) 1부. 끝.

수신처 : 종합건설본부장(토목1부장), 강남구청장(도시정비과장), 서초구청장(도시정비

과장), 관계과장.

제 4 안

수신 : 공보관

발신 : 도시개발과장

제목 : 공고 게재 의뢰

1505-25(2-2)일(1)문  
85. 9. 9. 승인

5-3

190mm×268mm 인쇄용지 2급 99g/㎡  
가 40-41 \*1988. 9. 23

"내가아낀 종이 한장 놓어나는 나라살림"

1. 유력사에서 사업시행중인 영등포구확장역 사업시행계획을 본포, 영구정 역까지  
 지구역 대하여, 별첨 공고문(사본)과 같이 사업계획 변경(기간연기) 연기에 따른 공람표지,  
 공고계획 의뢰어오나 포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 용

가. 공고종별 : 일간지 2개사 및 시보

나. 공고내용 : 별첨 공고문(사본)

다. 공고표지출 : 공고후 청구에 의거 저출

첨부 : 공고문(사본) 3부. 끝.

서울특별시 도시개발공사  
 서울특별시 도시개발공사 도시개발부

공 고 안(안)

서울특별시 공고 제 185 호

영동토지구획정리 사업 계획 변경(기간연기)인가에 따른 공람공고

1. 건설부 고시 제6호('68.1.18)호 및 제8호('68.1.23), 제77호('71.8.24)로 사업시행인가된 영동토지구획정리 사업시행지구중 환적확정 처분 미완료된 반포, 압구정 아파트 지구에 대하여 토지구획정리 사업법 제12조 및 제14조, 같은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계획 변경(기간연기) 인가코자 다음과 같이 공람공고 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개발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에 관계인에게 보이며, 개별통지는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

1990. 11

서울특별시장

지구명	시 행 면 적	시 행 자	사업 시행 기간		비고
			당 초	변 경	
영동지구	26,764,872.9m <sup>2</sup> 중	서울특별시장	'68.1.18-	'68.1.18-	6개월 연장
	5,421,066.6m <sup>2</sup>		'90.12.31	'91.6.30	